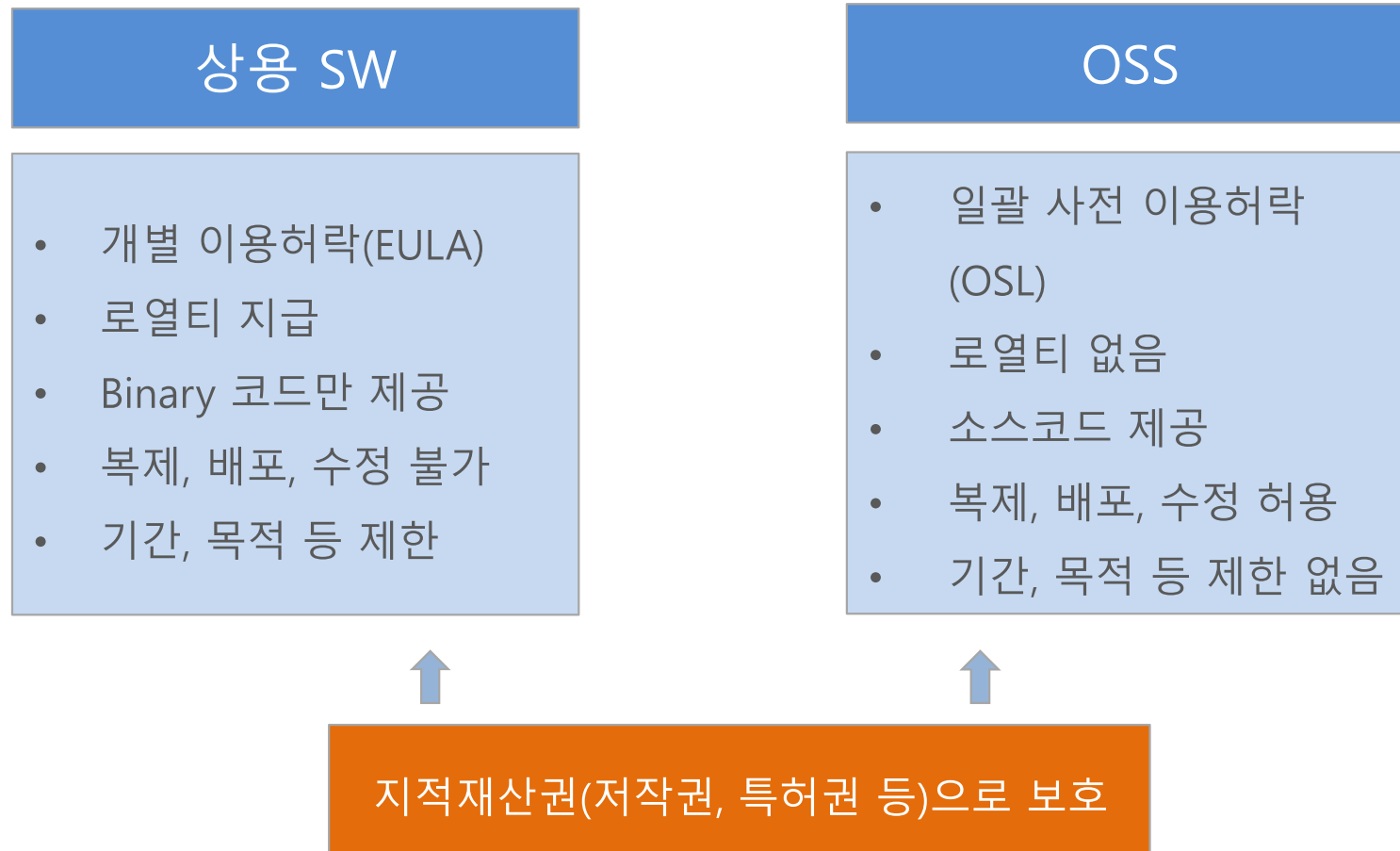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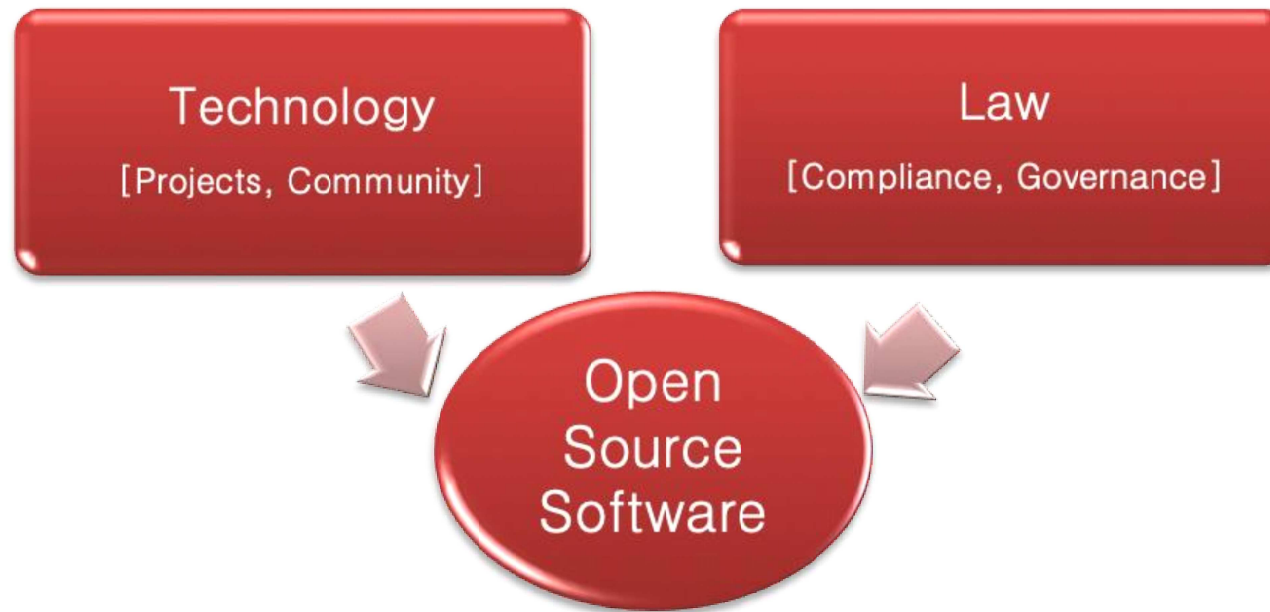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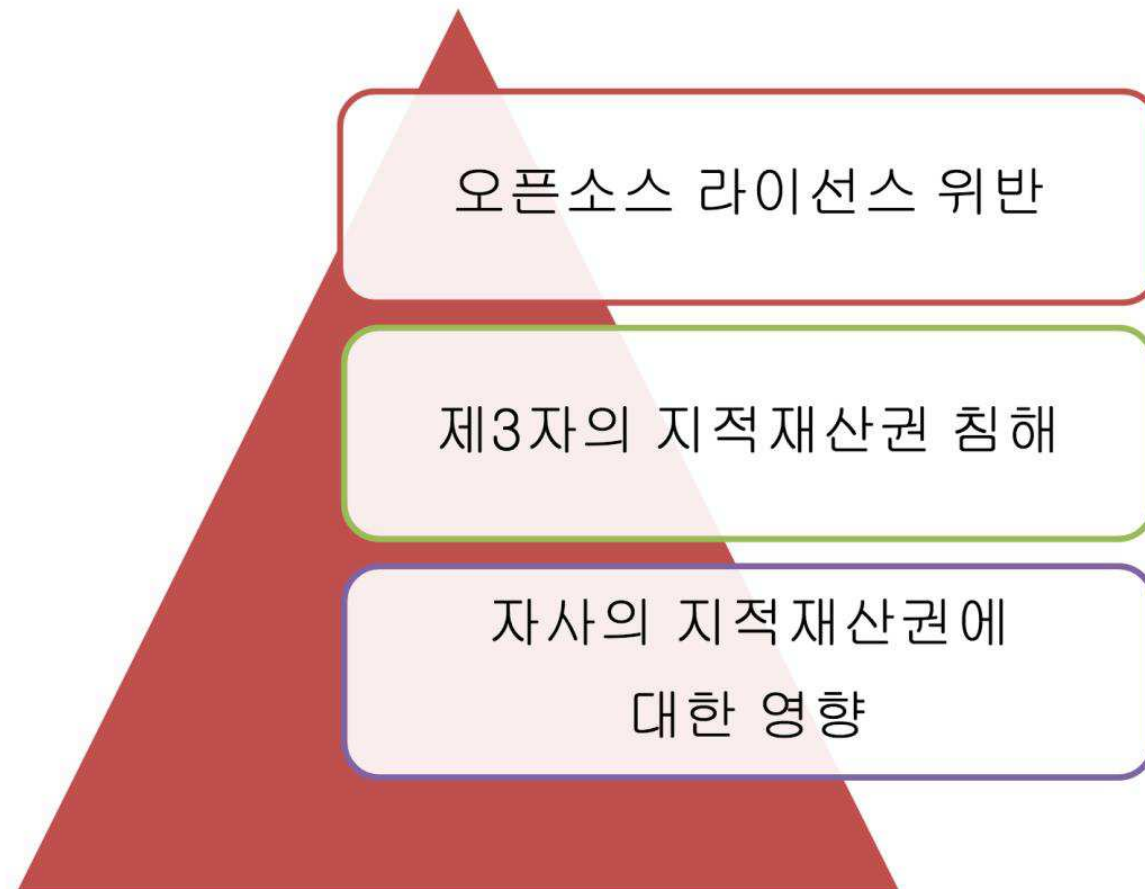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2019. 7. 23.

I. 오픈소스의 의미와 현황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 기류의 변화 – 금전적 배상 노리는 단체, 개인 등장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 단순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및 자사의 지적재산권 관리와 대응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II.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법적 이슈

➤ 컴플라이언스 위반 - 법적 효과

-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회사 (or 조직) 에 다양한 유형의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야기

영업비밀의 공개 위험

-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 양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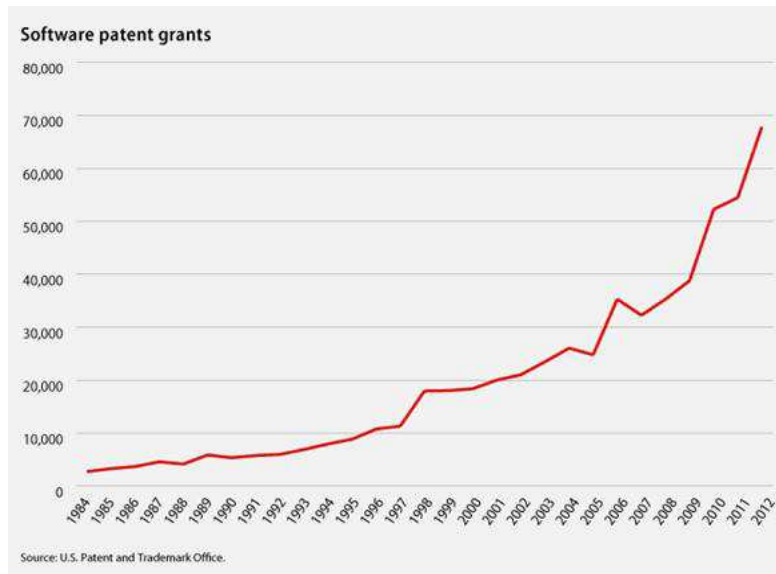
기타 손해

- 기업평판, 서비스 정지에 따른 고객 불만, 대체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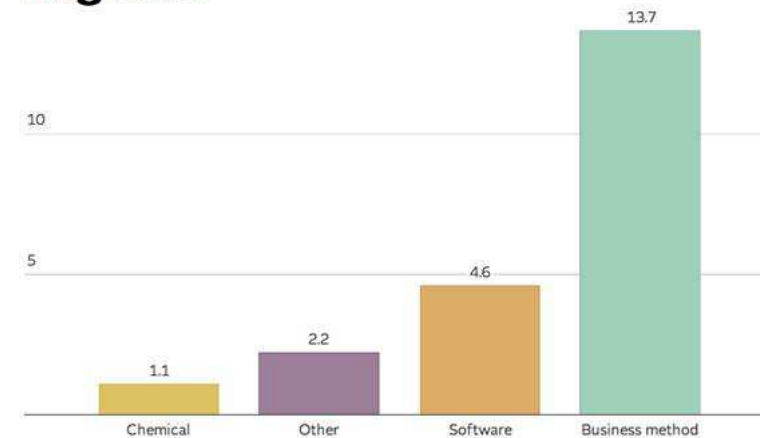
II.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법적 이슈

➤ 오픈소스와 특허 (Patent)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분쟁 증가



Percentage of patents involved in litigation



Source: James Bessen and Michael Meurer



II.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법적 이슈

➤ 오픈소스와 특허 (Patent)

▶ 오픈소스의 특허 침해 리스크

- 소프트웨어 특허는 하드웨어에 비해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침해 회피가 어려움
-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의 공개로 특허 침해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
- 오픈소스 SW 이용자는 cross-licensing 등을 이용한 방어 역량이 부족
- 보증부인, 책임제한 조항으로 이용자가 리스크 부담

▶ 자사의 특허에 대한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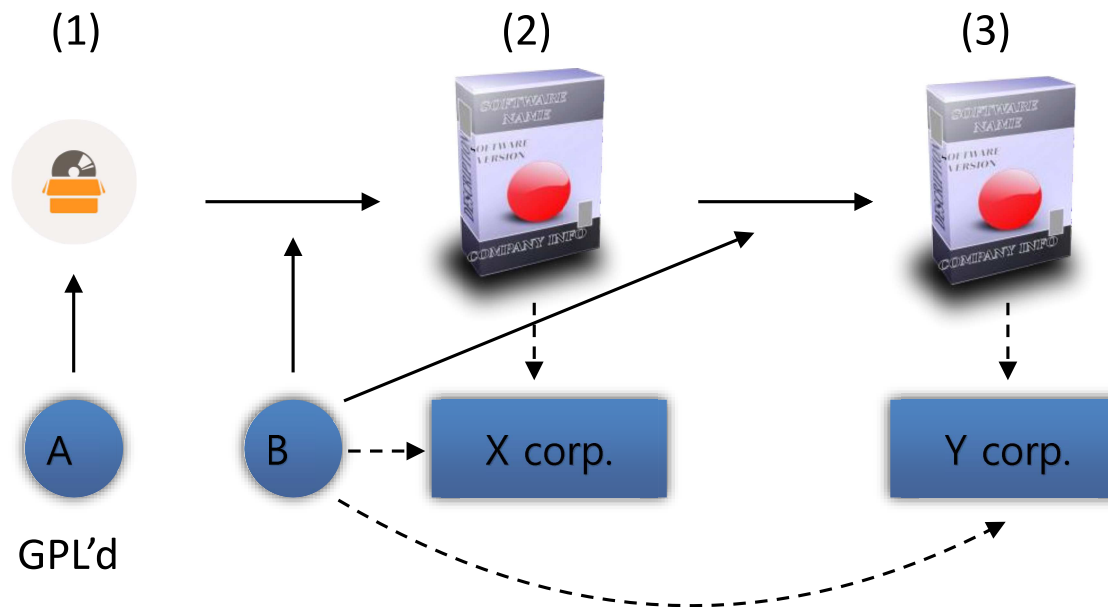
- 묵시적 특허 라이선스
-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APL, MPL, GPL v3)
- 특허 보복조항

II.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법적 이슈

➤ 오픈소스와 특허 (Patent)

-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의 경우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기술이 오픈소스 SW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엘림넷 vs. 하이온넷



■ 엘림넷 vs. 하이온넷

X 회사의 B 및 Y 회사에 대한 청구

저작권 침해

2차적 저작물의 업무상 저작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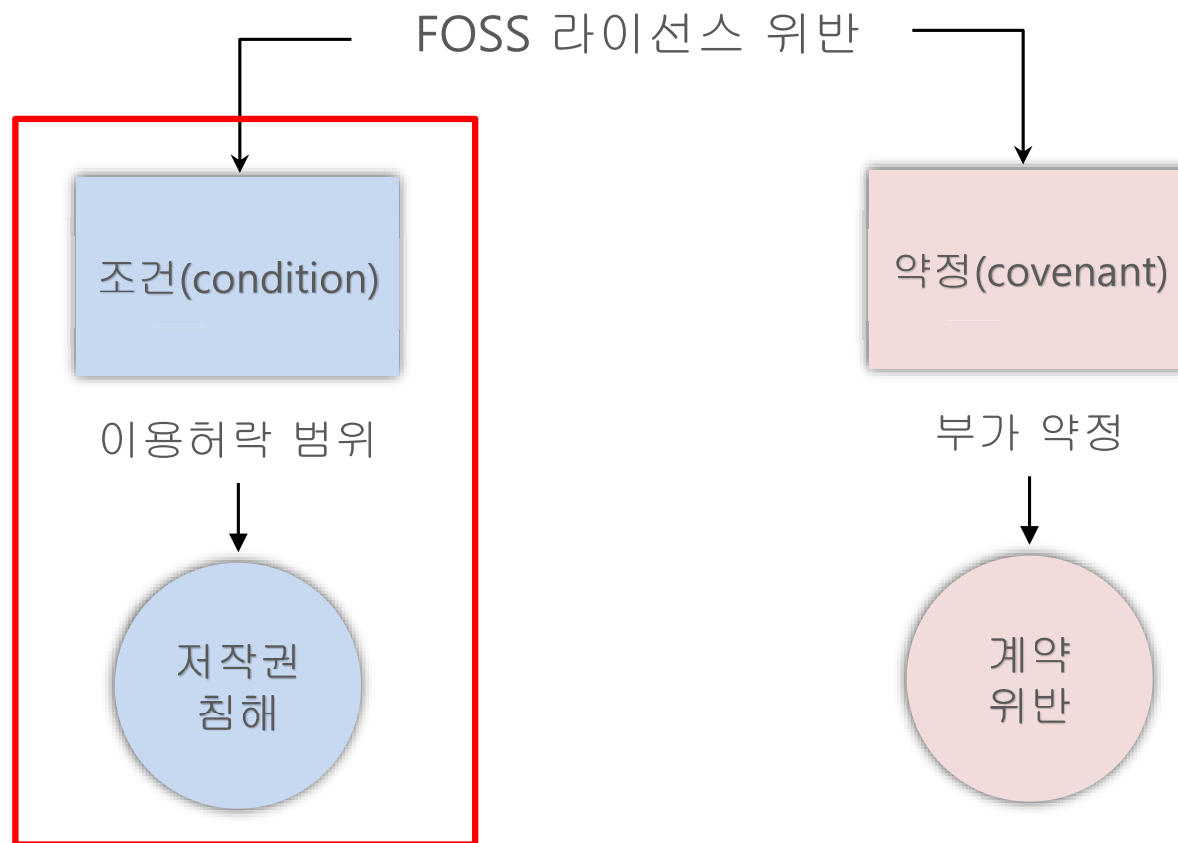
FOSS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공개된 소스코드 - 영업비밀 X

비공개 소스코드 - 영업비밀 가능

소스코드 미공개로 인한 GPL위반과는 별개의 문제

■ Jacobsen vs. Kat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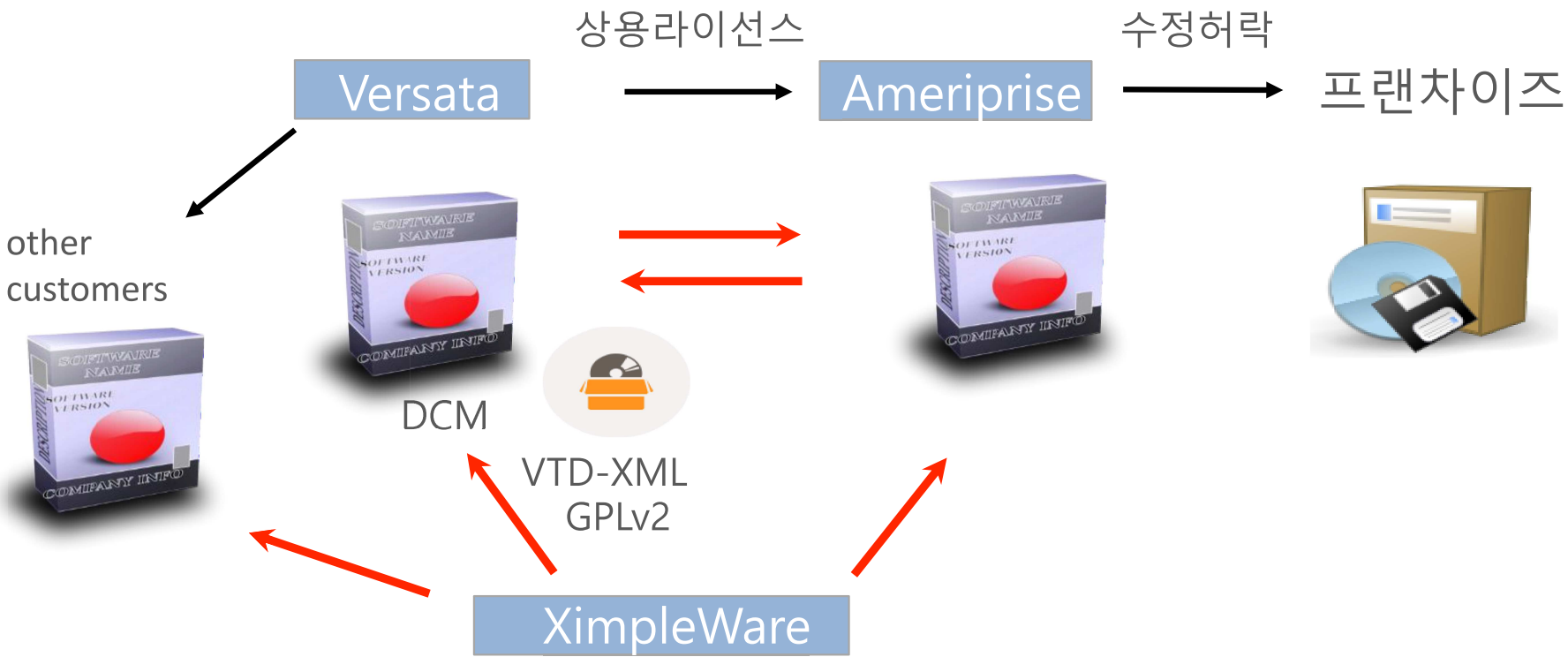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SFLC의 busybox 소송

회사명	위반제품
BestBuy, Co., Inc	Insignia NS-WBRDVD Blu-ray Disc Player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LN52A650 , LA26A450 LCD HDTV
Westinghouse Digital Electronics, LLC	TX-52F480S LCD HDTV
JVC Americas Corporation	LT-42P789 LCD HDTV VN-C20U IP Network Camera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WDBABF0000NBK WD TV HD Media Player
Robert Bosch LLC	DVR4C Security System DVR
Phoebe Micro, Inc.	Airlink101 AR670W AR690W wireless routers Airlink101 AICAP650W IP Motion Wireless Camera
Humax USA Inc.	iCord HD HDTV DVR
Comtrend Corporation	CT-5621, NexusLink 5631/ 5631E ADSL2+ bonded modems
Dobbs-Stanford Corporation	Frame Jazz EyeZone B1080P-2 digital media player
Versa Technology Inc	PS-730 ITS Gateway VX-BW2250 weatherproof dual radio outdoor wireless access point
ZyXEL Communications Inc.	P-663H-51 ADSL 2+ Bonded 4 Port Router
Astak Inc	CM-818DVR4V security camera system with DVR, CM-04DE, CM-04DEV security system DVR devices
GCI Technologies Corporation	Cortex HDC-3000 digital music controller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Versata vs. Ameriprise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Versata vs. Ameriprise

제기된 이슈

-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SW를 넘겨준 것이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GPLv2를 위반한 제품의 단순 이용자의 책임
- 제3자의 GPL 효력 주장 가능 여부

시사점

- OSS 사용에 대한 내부 정책 확립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확인 필요
- 제품 배포시에 FOSS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 필요

XimpleWare의 특허 침해 소송

XimpleWare v. Versata, Aurea Software Inc., Trilogy Development Group, Inc., Ameriprise Financial Services, Inc., Ameriprise Financial, Inc., United HealthCare Services, Inc., Waddell & Reed, Inc., Aviva USA Corporation,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Pacific Life Insurance Company,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Inc. (subsequently dismissed), Wellmark, Inc., Case No. 5:13cv5161,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XimpleWare의 저작권 침해 소송

XimpleWare v. Versata, Trilogy Development Group, Inc., Ameriprise Financial, Inc., Ameriprise Financial Services, Inc., Aurea Software, Inc., Case No. 3:13cv5160,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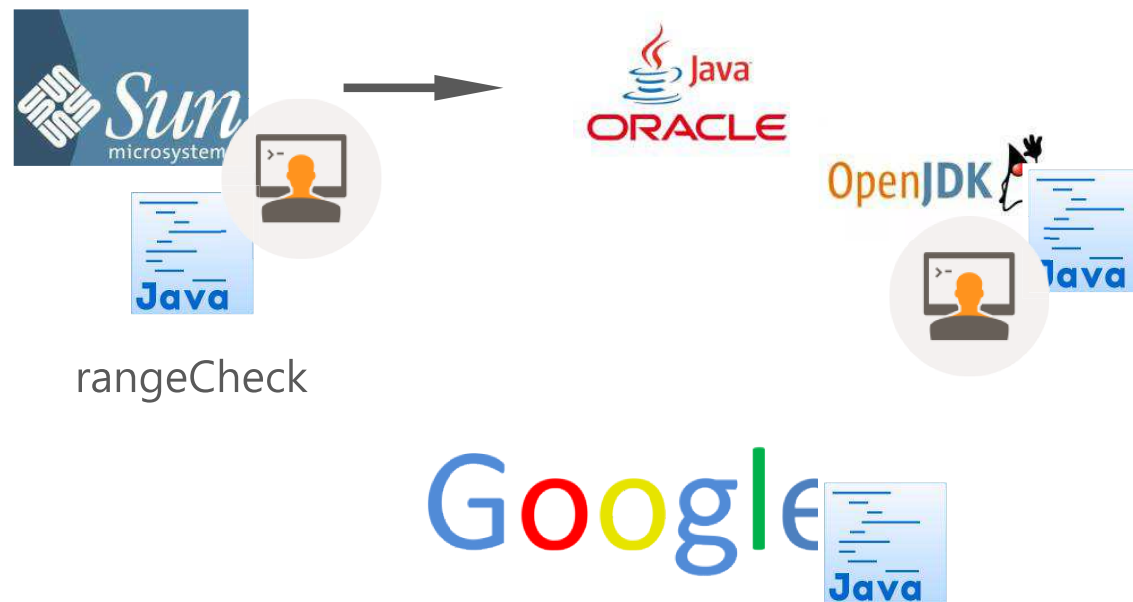
■ Google v. Oracle

Java의 API Package

-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Java ME를 사용하지 않고 Dalvik 가상머신을 설계한 후 자바 API 내의 함수들을 자체적으로 구현
- 다만 총 168개의 API 패키지 중 37개가 자바 API 패키지의 declaring source code와 구조, 순서, 조직(SSO)과 동일 - 저작물성이 쟁점
- 1심에서는 저작물성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인정 - 공정이용 판단위해 1심으로 환송
- 1심에서 공정이용 인정했으나 2심에서 공정이용 불인정하고 손해배상 산정위해 1심으로 다시 환송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Google v. Ora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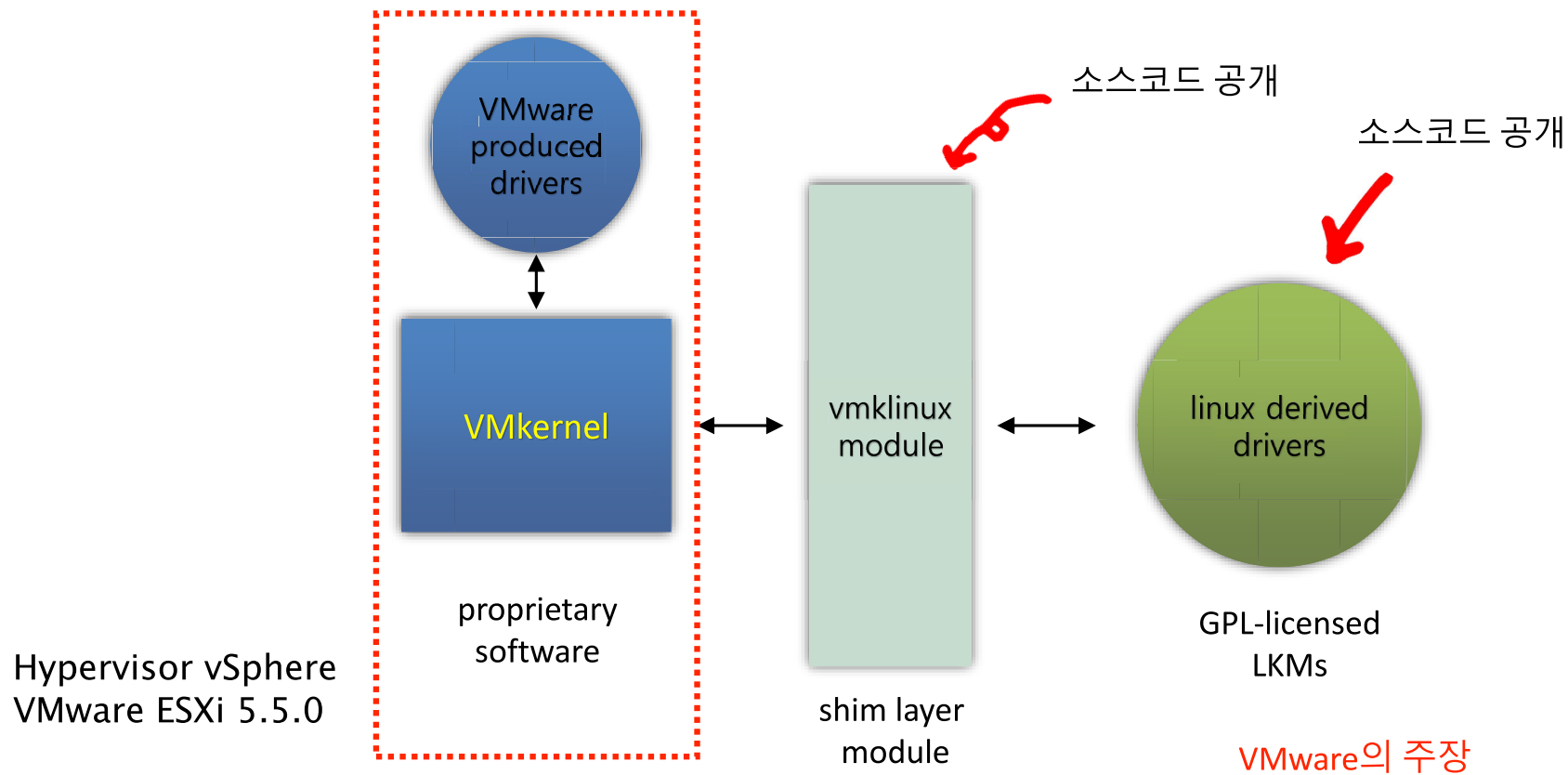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er Hellwig v. Vmware Global

- 사안의 개요
 - VMware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회사(<http://www.vmware.com>)
 -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는 2011년 VMware의 서버소프트웨어인 vSphere(ESXi)가 Busybox를 사용함에 있어 GPL위반 소지가 있다며 확인 요청. VMware는 이에 대해 적극적 협력
 - 분석도중 ESXi가 리눅스에 적용된 GPLv2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제기되자 VMware가 이를 다투면서 분쟁이 장기화
 - 리눅스 개발자인 Christoph Hellwig은 VMware의 서버소프트웨어인 vSphere(ESXi)가 리눅스 중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적용된 GPLv2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VMware을 독일 법원에 제소
 -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가 소송자금 펀딩 등 지원작업
 - VMware vmklinux 제거하고 원고는 2019. 4. 상소포기해서 확정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er Hellwig v. Vmware Global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her Hellwig v. VMware Global

- 사안이 갖는 함의
 -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소송은 라이선스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간과하거나 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 했던 경우에 해당. 라이선스 상의 의무(소스코드 공개 등)를 이행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됨
 - 이 사안은 그와 달리 라이선스 해석의 문제로 GPL의 적용범위에 관한 까다로운 법률적 이슈가 쟁점
 - LKMs(Loadable Kernel Modules)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쟁송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er Hellwig v. Vmware Global

“work based on the program” vs. “mere aggre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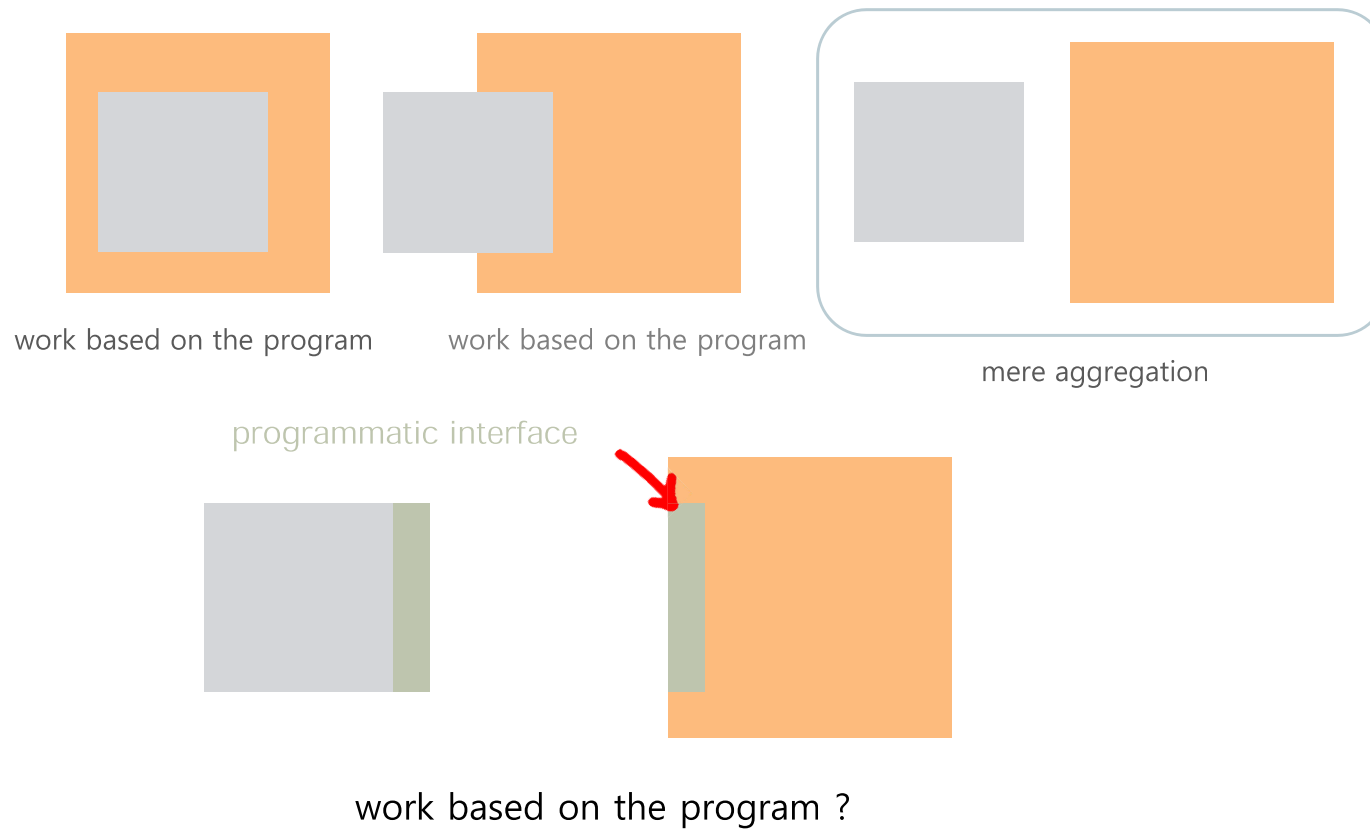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her Hellwig v. Vmware Global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Christoper Hellwig v. Vmware Global

general copyright approach

- PI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
- if not -> 실행시 연결된다고 해서 derivative work는 될 수 없음

functional approach (FSF)

- communication protocol(sockets, pipes, etc) - 별개의 프로그램
- shell command, exec, fork - 별개의 프로그램
- Linking - 정적(static), 동적(dynamic) 불문하고 derivative work
- 어느 한 작업만을 호출하는 dynamic linking 또는 복잡한 내부데이터 구조를 교환하고 밀접하게 상호연결되는 communication - 불명확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Patrick McHardy

- 리눅스 커널 개발자인 Patrick McHardy는 2013년 12월부터 적극적으로 독일에서 GPL 소송제기를 시작하였음 (독일 내에서만 50 여 개 기업이 소송 당함)
- McHardy는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 netfilter, iptables, iproute2, IMQ 그리고 nftables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진행/합의 중
- 최근에는 채널/유통업체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음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Patrick McHardy

- 한국 관련: 2016년 말부터, 한국의 기업들도 warning letter 를 받기 시작 → 법률적 분쟁 예상 됨
- 시사점 = 특허 트롤 (Patent troll) 들과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 등장
- 기존의 라이선스 집행 사례와 상이한 점 :
 - 경제적인 동기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짐
 - 현재까지 합의된 건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불안감 증대(한국 기업 포함)
 - 커널 기반의 저작권
 - 조잡한 “정지 명령” (Cease and Desist Letter) 편지
 -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는 소송제기
 - 적발된 기업이 아닌, McHardy와 그의 변호사가 먼저 합의조건을 제시 함
 - 컴플라이언스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논이 없음 (기업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함)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Artifex Software v. Hancom

- 한컴 오피스의 PDF 모듈에 사용된 고스트 스크립트
- 고스트 스크립트는 GPL이 적용된 오픈소스로 듀얼 라이선스 정책 채택
- 고스트 스크립트의 저작권자인 Artifex Software가 한컴을 계약위반과 저작권침해로 제소
- 205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로 종료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SW의 명칭 변경 문제

- DB 관리 및 접근제어 소프트웨어인 '올챙이'는 LGPL 적용
- K사가 올챙이를 기반으로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여 웹서비스형태로 내부적으로 사용
- 올챙이의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
-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M&A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 Cisco의 Linksys 인수 (FSF v. Cisco)
 - 사실관계
 - » Broadcom이 OSS를 이용하여 개발한 SW 모듈을 Linksys에 제공한 후, Cisco가 Linksys 인수
 - »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가 Cisco를 상대로 GPL 2.0 및 LGPL 2.0 위반을 이유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합의로 종결
 - 시사점
 - » M&A 과정에서, OSS Audit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III.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M&A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라클의 테켈렉 인수 (Continuent v. Tekelec)
 - 사실관계
 - » Continuent는 DB 클러스터링 및 복제 SW인 텅스텐 (Tungsten) 을 배포
 - » Tekelec은 SW 개발 시, Continuent의 텅스텐 GPL 버전 사용 → 라이선스 의무 불이행
 - » 그 상태에서 Oracle이 Tekelec 인수 → Continuent는 인수기업인 Oracle을 상대로 Tekelec이 GPL 2.0의 저작권 고지 및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 시사점
 - » M&A 이후에도 , OSS 라이선스 위반이 있으면 → 인수한 기업이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대응팀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T) 02-6386-6601

(F) 02-772-4001

Lee
& Ko